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8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12.18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8년 9월 18일 안광석·이상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각각 10월 1일, 10월 29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시설의 접도조건을 자치구가 필요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조정하며, 위임기준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구청장이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

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,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제조업소, 노래연습장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제4항 신설)

-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(안 제54조제13항)
-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, 입체·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등을 재정비함(안 별표4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항제1호의 가목, 사목, 너목, 더목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.

제54조제13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별표 4 중 사무명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(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,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,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)

같은 호 사목 중 “(동사무소, 파출소, 우체국 등 지역단위 청사에 한함)”을 “(동사무소, 파출소, 소방파출소, 우체분국, 보건지소로 한정함)”으로 하고,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. 문화시설(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, 전시 시설,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)

같은 호 타목 중 “(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)”을 “(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)”으로 하며, 더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더. 공원(어린이공원, 소공원으로 한정하되,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)

러. 시장(市場). 다만,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.

같은 표 사무명란 제5호 중 “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”을 “지형도면”으로, “사무”를 “사무(다만,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~ ③ (생 략)</p> <p>〈<u>신 설</u>〉</p> <p>제54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 ~ ⑫ (생 략)</p> <p>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.</p> <p>[별표 4] 권한위임 사무 (제68조 관련)</p>	<p>제28조(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항제1호의 가목, 사목, 너목, 더목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54조 (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⑬ ----- <u>제6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[별표 4] 권한위임 사무 (제68조 관련)</p>

현행		개정안	
사 무 명	관계법령	사 무 명	관계법령
<p>1. (생략)</p> <p>2. <u>도시관리계획의 결정·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(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,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)</u></p> <p>가. ~ 바. (생략)</p> <p>사. <u>공공청사(동사무소, 피출소,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함)</u></p> <p>아. (생략)</p> <p>자. <u>도서관(200석 이하의 일반도서관에 한함)</u></p> <p>차. ~ 카. (생략)</p> <p>타. <u>가스공급설비(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)</u></p> <p>파. ~ 너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3. ~ 4의2. (생략)</p> <p>5. <u>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</u></p> <p>6. ~ 14.(생략)</p>	<p>○(생략)</p> <p>○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</p> <p>○(생략)</p> <p>○법 제33조제48조 · 제53조, 영 제28조제42조 · 제50조</p> <p>○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(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,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하며,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)</u></p> <p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-----(<u>동사무소, 피출소, 소방피출소, 우체분국, 보건지소로 한정함</u>)</p> <p>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자. <u>문화시설(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, 전시시설,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)</u></p> <p>차. ~ 카. (현행과 같음)</p> <p>타. -----(<u>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</u>)</p> <p>파. ~ 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더. <u>공원(어린이공원, 소공원으로 한정하되,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)</u></p> <p>러. <u>시장(市場). 다만,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.</u></p> <p>3. ~ 4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지형도면-----사무(다만,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)</u></p> <p>6. ~ 14.(생략)</p>	<p>○(현행과 같음)</p> <p>○-----</p> <p>○-----</p> <p>○(현행과 같음)</p> <p>○-----</p> <p>○(생략)</p> <p>○(현행과 같음)</p> <p>○-----</p> <p>○(생략)</p>